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한시적 시행 안내

1. 평소 건강보험 업무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사 집단행동으로 ‘요양비 처방전’ 발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존 요양비 수급자에 한하여 처방전 없이 급여(처방)기간 연장·급여제품 구입(대여) 및 요양비 청구를 허용하는 한시적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기관 및 소속 회원 등과 공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

- ◆ **(대상)** '24.3.5.기준 급여(처방)기간 도래 및 초과하여 재처방이 필요한 급여대상자
- ◆ **(내용)** 요양비 급여대상자가 급여(처방)기간이 도래하거나 초과하여 동일처방(상병, 제품, 기간 등)으로 급여품목 구입(대여)이 필요한 경우, 처방전 없이 직전 처방전으로 급여기간 연장 및 요양비 지급 청구 인정
- ◆ **(급여품목)** 산소치료, 당뇨병소모성재료,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 ※ 다만, 만성 신부전환자의 복막관류액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처방전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요양비 급여 특례 대상에서 제외
- ◆ **(특례적용기간)** '24.3.5.청구분부터 ~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 ◆ **(특례적용 처방기준)** 최초처방 또는 기존 처방전의 동일처방(상병, 제품, 기간 등)내역과 다른 처방은 급여특례대상에서 제외되며, 양압기 경우 순응 이후 2번째 처방, 당뇨병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3번째 처방부터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대상

3. 아울러, 공단에서 「요양비 수급자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시행 문자」를 요양비 수급자 등에게 전송하였으며, 준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대여)할 시, 수신한 문자를 꼭 제시할 것을 순차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준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 처방전이 없음을 이유로 요양비 품목 판매(대여)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요양비 수급자가 제시한 문자를 확인 후 급여제품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문 1부. 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수신자 대한약사회, 준요양기관

대리 나지윤

팀장 김재임

부장

전결 3/11

김은선

협조자

시행 급여지급부-849

(2024.3.11.) 접수

()

우 2646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1, 5층(반곡동, 로데오 리젠트파

/ <http://www.nhis.or.kr>

크)

전화 033-736-3318

전송 033-749-6361 / 200247@nhis.or.kr

/ 비공개(7)